

평창군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2. 9(화) 평창군수(문화관광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9(금)
- 다. 상정일자 :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. 12. 22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문화관광과장 김학근)

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의 “평창무이예술관”, “평창덕거연극인촌”, 평창용전오페라학교 “에 대하여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를 마련하고,
- 본 시설을 문화예술전문가들에게 위탁관리하게 하여 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, 관광자원활용과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, 수탁자에게 수익사업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제정목적과 시설 및 기능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)
- 시설운영주체 및 시설위탁대상 및 기간(안 제4조, 제5조)

- 수탁자선정 및 수탁적격자 심사 방법(안 제6조, 제7조)
- 위탁조건 및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마련으로 자립기반 마련(안 제8조, 제9조)
- 협약체결 내용 및 수탁자 준수사항(안 제10조, 제11조)
- 군수나 지역주민등 제3자 필요시 시설사용근거 마련(안 제12조)
- 위탁협약 위반시 조치사항 및 위탁자의 지휘감독 근거(안 제13조)
- 기타 준용 및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에 위임(안 제15조, 제16조)

4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동법 제135조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
 - 현재 우리군에서 폐교를 활용하여 조성한 “평창무이예술관”, “평창덕거언극인촌”, “평창용전오페라학교”에 대하여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- 객관적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,
 - 위탁조건 및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 - 또한, 운영의 탄력성을 위하여 군수나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사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현 시점에서 위탁관리의 통일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.

○ 기타 법령이나 자구의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